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주 의 요 구

제 목 수산종묘방류사업 추진 부적정

기 관 명 충청남도 당진시

내 용

FTA 등 국제 수산업 여건변화에 대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후 온난화 등으로 감소된 어업자원의 조성을 위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어업생산력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충청남도 당진시에서는 [표1]과 같이 수산종묘 방류사업(국비 70%, 지방비 30%)을 추진하고 있다.

[표1] 수산종묘 방류사업 추진 현황

년 도	품 종	사업비(천원)		
		계	국비	지방비
합 계		1,150,000	920,000	230,000
2015	넙치 등 6종	550,000	440,000	110,000
2016	동자개 등 2종	200,000	160,000	40,000
2017	넙치 등 4종	400,000	320,000	80,000

1. 수산종묘 계약체결 시기 부적정

해양수산부 「수산종자관리사업지침」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·도지사는 납품계약이 체결되면 납품일시와 장소 등 납품 및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납품 3일전까지 납품계약 체결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, 종자의 검수는 담당하는 공무원이 사전에 종자의 규격, 건강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, 종자로

써 합당하다고 판정된 경우, 검수 이후 24시간 내에 방류하도록 되어 있다.

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납품계약 체결 후 검수 등을 거쳐 종자의 규격, 건강상태 등의 점검 후 방류하여야 한다.

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관내 내수면어업 생산력 향상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자개 종자 271천 마리(50백만원)를 2016. 9. 24. 방류한 후 6일이 지난 2016. 9. 30. 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.

2. 수산종묘방류 시기 부적정

같은 지침 제8조에 따르면 수산종묘의 방류시 자연환경에 적응력 및 생존율을 높이기 위하여 종묘의 품종별 방류시기를 정하고 있으며, 방류품종이 작황부진, 수산생물 전염병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방류가 불가능하거나, 수산자원 조성, 생태계 보전, 시험방류 등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한적으로 방류 품종, 크기, 시기 등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.

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산종묘의 방류시기를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7년 넙치 667천 마리(150백만원) 방류시 국립수산과학원장과의 협의 없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방류시기인 3~7월을 위반하여 8. 10.에 방류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.

조치할 사항 **충청남도 당진시장은**

[주의] 수산종묘매입 방류 시 계약절차, 어종별 방류시기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